

■ 최신 법령 ■

[공정거래] 「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」 제정

박형삼 변호사 | 이병주 변호사

공정거래위원회는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)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를 심사하는데 있어 인터넷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.

1. 일반적 심사기준으로, ①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,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, 크기 및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당성을 판단하고, ② 관련사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, 그 부당성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했는지 여부,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, ③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은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해야 하며,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.
2. 세부적 심사기준으로 ① 인터넷 광고 유형(배너광고, 검색광고, 이용후기 광고, 기타 인터넷 광고)에 따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, ② 인터넷 광고 내용(사업자 자신 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광고, 상품 등의 내용 및 거래조건에 대한 광고)에 따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3.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4. 다운로드 : 「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」 제정(2012. 9. 4. 제정,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7호)

[공정거래] 「기업결합의 신고요령」 개정

종래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해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고서식 등을 간소화하였습니다.

1.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해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. 예컨대 ①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일어나는 경우 최종 취득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, ②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계산시 국내 매출액에서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하고, ③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이라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될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다시 발생하며, ④ 대규모 회사 아닌 자의 임원겸임, 사외이사의 다른 회사 사외이사로의 임원겸임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고, ⑤ 회사설립에 의한 기업결합 시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이 신고하면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2. 종래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었으나, ① 공개매수, ② 유증, ③ 다른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가 일원화되고 해당 기관에 사후 신고하는 경우, ④ 담보물권의 실행, ⑤ 의결권 회복의 경우 사전신고가 사실상 어려워 예외적으로 사후신고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3. 그 밖에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. 예컨대 외국회사의 계열사 현황 작성 시 국내매출액 없는 계열사의 경우 회사명, 지역, 영위업종만 기재하는 것으로 내용을 축소하였습니다.
4. 다운로드 : 「기업결합의 신고요령」(2012. 6. 19. 개정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-15호)